

# 2021년도 제1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3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성호(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68건(안건번호 제2021-72205호~7300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72205호~72215호(순번 1번~11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72997호~73000호(순번 793번~796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4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65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5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 5쪽의 OSP명, 6쪽의 게시물 내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관련 OSP명, 게시물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30 포인트에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0건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2권을 30 포인트

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100원에 대여, 200원에 구매 가능함.

(순번 5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4권을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500원에 구매 가능함.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저작물을 복스캔 후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은 게시물에 대

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2번~79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34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Christmassy!'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Christmassy!'를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가수 '더보이즈'의 전집을 압축 파일로 제공함. 해당 음악은 2020. 12. 7.에 발매한 국내 댄스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방송 '주피터스 레거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주피터스 레거시'를 3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5. 7.에 공개한 시즌 1 1화~8화 전체 분량인 약 47분을 mp4 파일로 제공함. 넷플릭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영화 '스웨그 에이지 : 외쳐, 조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스웨그 에이지 : 외쳐, 조선!'을 5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44분을 mp4 파일로 제공함. 2021. 5. 13.에 개봉한 국내 공연실황 영화이며, 웨이브(WAVVE), 티빙(TIVING) 등 OTT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SW 'Adobe Photoshop CC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2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dobe Photoshop CC 2021'를 23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자동인증이 완료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개월 24,000원임.

- B 위원: 해당 저작물의 정품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지? 아니면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패키지 형식으로는 제공되지 아니하고, 클라이언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 설치 후, 시리얼번호 필요 없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이용이 가능함. 본 안건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계정 로그인 자체가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인증 절차 필요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B 위원: 정품 프로그램의 경우 라이선스로 이용료를 지불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 안건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하여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93번~79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총 게시물수는 4건임. (순번 793번~796번 채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순번 793번~796번은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789번~792번 채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순번 789번~792번과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C 위원: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중복으로 심의 요청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C 위원: 순번 793번~796번은 부결하고, 순번 12번~79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93번~796번은 부결하고, 순번 12번~79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2997호~73000호(순번 793번~796번)는 부결하고, 제2021-72205호~72996호(순번 1번~79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7.

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